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8
----------	------

제출년월일 : 2014.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1. 개정사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중 단위부담금 내용이 개정되어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단위부담금 2단계(3천㎡미만은 450원, 3천㎡이상은 700원) 구분 조항 삭제 별표 1의2로 조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법령의 단위부담금 조정 한도(100분의 100의 범위)로 조정하고, 3단계(3천㎡이하, 3천㎡초과~3만㎡이하, 3만㎡초과)로 구분하여, 연도별 단위부담금 신설. (안 별표 1의2)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별표 1의2와 같이 조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 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450원	450원	450원	450원	450원	450원	4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u>법 37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700원.</u></li> <li>2. <u>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450원.</u></li> </ol>	<p>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u>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별표 1의2와 같이 조정한다.</u></p>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계법령	<p>□ 「도시교통정비 촉진법」</p> <p>제37조(부담금의 경감)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p> <p>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p> <p>□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p> <p>제18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2의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18조 관련)</p> <p>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left;">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th> <th colspan="7">연도별 단위부담금</th> </tr> <tr> <th>2014년</th> <th>2015년</th> <th>2016년</th> <th>2017년</th> <th>2018년</th> <th>2019년</th> <th>2020년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3천제곱미터 이하</td> <td>350원</td> <td>350원</td> <td>350원</td> <td>350원</td> <td>350원</td> <td>350원</td> <td>350원</td> </tr> <tr> <td>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td> <td>350원</td> <td>400원</td> <td>450원</td> <td>500원</td> <td>550원</td> <td>600원</td> <td>700원</td> </tr> <tr> <td>3만제곱미터 초과</td> <td>400원</td> <td>500원</td> <td>600원</td> <td>700원</td> <td>800원</td> <td>900원</td> <td>1000원</td> </tr> </tbody> </table>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특이사항	“해 당 없 음”																																							